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6타경50027 어업권임의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6. 8. 19.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김범석 전자서명완료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20. 12. 16. 저당권			배당요구종기	2026. 4. 27.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 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 분	점유의 권 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 증 금	차 임	전입신고일자·외국인등록(체류지변경신고)일자·사업자등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조사된 임차내역없음									

<비고>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고란

1. 특별매각조건: 매각결정기일까지 완도군수의 어업권이전인가서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2. 본건 어업권의 감정평가는 양식시설물 및 양식물이 포함되지 않는 어업권만의 감정평가임
3. 어업권 원부상 어업권의 제한 또는 조건 있음(어업권 원부 참조)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어업권의 표시

2026타경50027

[물건 1]

1. 어업및어구의 명칭 : 어류등양식
 면 허 번 호 : 한정양식업 제14298호
 어 장 의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상정 지선
 면허허가일자 : 2020. 11. 6.
 면허기간 : 2020. 11. 6.부터 2030. 11. 5.까지
 체포물이 종류 : 어류등
 어업의 시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어장면적 : 9,000㎡
 [어장의 위치는 별지(수면의위치와구역도)와 같음]

감정평가액	260,000,000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6.09.21	260,000,000	26,000,000
2회	2026.11.02	182,000,000	18,200,000
3회	2026.12.14	145,600,000	14,560,000
4회	2027.01.18	116,480,000	11,648,000

1. 특별매각조건: 매각결정기일까지 완도군수의 어업권이전인가서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2. 본건 어업권의 감정평가는 양식시설물 및 양식물이 포함되지 않는 어업권만의 감정평가임
3. 어업권 원부상 어업권의 제한 또는 조건 있음(어업권 원부 참조)

	면허번호란	제 14298 호		

표제부

표시번호란				
표시란	면허년월일	2020년 11월 6일	어장의 위치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 읍(면) 상정 리 별지 도면과 같음 (면적 : 9,000 ㎡)
	어업의 종류	어류등 양식	어구 또는 장치의 명칭	어업의 방법 가두리식
	체포물의 종류	어류 등	어업의 시기	1 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업권 존속기간	10 년 (2020 년 11 월 6 일부터 2030년 11 월 5 일까지)		
	제한 또는 조건	1. 동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어장분할 변경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어업권자는 3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어장정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 어업권자로 인한 어업권자에 보상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어장분쟁이 발생 시는 어업권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미 해결시는 어업권을 자진 포기하여야 한다. (완정)		
	위 등 록 함			
	서기 2020 년 11 월 6 일			

갑구

순위번호란	1번	2번
사항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면) 계포 리 성 명 : 강 선 하 주민등록번호 : 를(을) 위하여 어업권을 설정하였음을 등록함. 서기 2020 년 11 월 6 일	

을구

순위번호란	
사항란	- 등록권리자: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고금지점장 손기표 - 주 소: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동로2번길 2-1 - 채 무 자: 강선하 - 등록원인과 그 일자: 2020.12.16. 근저당설정 - 채권최고액: 금260,000,000원(금이억육천만원) - 내 용: 저당권 설정 등록 상기와 같이 등록함 2020.12.16. 사본자: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장길성

병구

순위번호란	순위	구분	등록사항	등록일자	이전일자
사항란	1	저당권 이전	채권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문안로 16(충정로1가) 채무자 : 강선하 주 소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계포로145번길 87-19, 무등빌라 2동 302호 채권최고액 : 금이억육천만원(₩260,000,000원) 등록원인 :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에 의함 변경사항 : 2020년 12월 16일 설정된 저당권 이억육천만원 전부를 금번 대위변제로 인하여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전부 이전함	2020-12-16	2025-11-27

정구

순위번호란	

수입 10 사 황도군 800원 2026.01.27 G22126782 자

완 도 군 수

(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완도군수인 면허사무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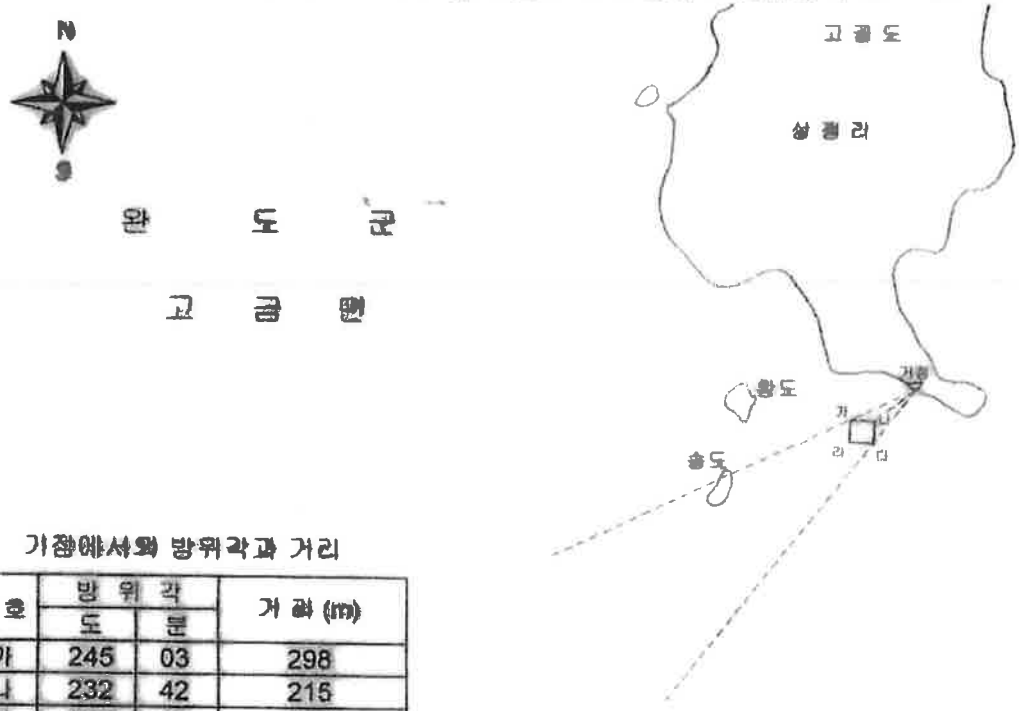
문서발행일: 2026년01월27일

2020년승인 41

수 면 의 위 치 와 구 역 도

전남 완도 양식어업면허 제 14298 호 축척 1/25,000

1. 어업의종류 및 양식물의 종류 : 어류등양식어업
2. 어업의명칭 및 어업의방법 : 가두리식(어류)
3. 수면의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읍) 상정리(동) 상정 지선
4. 기 점 :
 육상측점 (완도군 고금면(읍) 상정리(동) 상정나루터안쪽 거점 (X-95394.208, Y-179522.206)
 (가) 가점 육상거점으로부터 245° 03' 298 m 의 점
 에 점
 (라) 가점 육상거점으로부터 230° 37' 356 m 의 점
5. 수면의구역 : 하기도면에서 (가)(나)(다)(라) 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및 (가) 와 (라) 를 연결한 선에 의하여 표위된 수면 (수 면 적 9,000 ㎡)



가점에서의 방위각과 거리

부호	방위각		거리(m)
	도	분	
가	245	03	298
나	232	42	215
다	217	17	289
라	230	37	356

별 래

(WGS84)

구획점	직각좌표		위도			경도			점간거리(m)	
	X (N)	Y (E)	도	분	초	도	분	초	구간	거리
가	95268.149	179251.212	34	21	08.3645	126	46	28.106	가-나	100
나	95263.879	179351.128	34	21	08.2331	126	46	32.016	나-다	90
다	95163.971	179346.843	34	21	04.9905	126	46	31.857	다-라	100
라	95168.242	179246.952	34	21	05.1219	126	46	27.948	라-마	90

주식회사 성을이앤지

앤 한 조 사 측 량 열 : 제 01 - 202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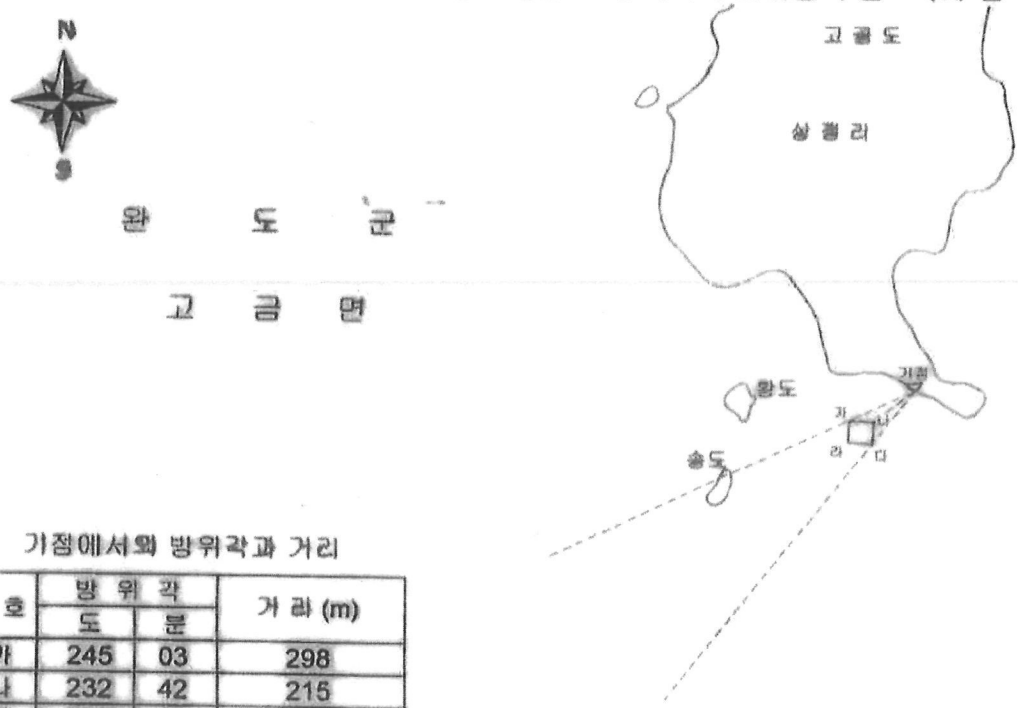
측 량 및 저 형 공 간 정 보 측 량 기 술 자 : 추 정 웅

2020년승인 41

수 면 의 위 치 와 구 역 도

전남 완도 양식어업면허 제 14298 호 축척 1/25,000

1. 어업의종류및 양식물의 종류 : 어류등양식어업
2. 어업의명칭및 어업의방법 : 가두리식(어류)
3. 수면의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읍) 상정리(동) 상정 지선
4. 기점 :
 육상측점 (완도군 고금면(읍) 상정리(동) 상정나루터안쪽 거점 (X-95394.208, Y-179522.206)
 (가) 가항 육상기점으로부터 245° 03' 298 m 의 점
 해장
 (라) 가점 육상가점으로부터 230° 37' 356 m 의 점
5. 수면의구역 : 하가도면에서 (가)(나)(다)(라) 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및 (가) 와 (라) 를 연결한 선에 의하여 표위된 수면 (차면적 9,000 ㎡)



가점에서의 방위각과 거리

부호	방위각		거리(m)
	도	분	
가	245	03	298
나	232	42	215
다	217	17	289
라	230	37	356

별 표

(WGS84)

구획점	직각좌표		위도			경도			점간거리(m)	
	X (N)	Y (E)	도	분	초	도	분	초	구간	거리
가	95268.149	179251.212	34	21	08.3645	126	46	28.106	가-나	100
나	95263.879	179351.128	34	21	08.2331	126	46	32.016	나-다	90
다	95163.971	179346.843	34	21	04.9905	126	46	31.857	다-라	100
라	95168.242	179246.952	34	21	05.1219	126	46	27.948	라-마	90

주식회사 성율이앤지

연안조사측량업 : 제 01 - 2022호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기술자 : 추 정 웅